

# 예산총칙

201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76,806,000	17,304,180
일반회계	503,050,000	15,091,500
특별회계	73,756,000	2,212,680
공기업특별회계	46,626,000	1,398,780
수도사업특별회계	18,126,000	543,78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8,500,000	855,000
기타특별회계	27,130,000	813,900
수질개선특별회계	4,078,000	122,34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59,000	61,77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1,013,000	30,39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197,000	65,91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2,000	6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961,000	88,830
치수사업특별회계	13,245,000	397,350
기반시설특별회계	17,000	510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1,558,000	46,74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897,4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